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실용신안공보(Y1)

(51) Int. Cl.⁵
B62J 9/02

(45) 공고일자 1993년 10월 15일
(11) 공고번호 실 1993-0007284

(21) 출원번호	실 1991-0011052	(65) 공개번호	실 1993-0002586
(22) 출원일자	1991년 07월 12일	(43) 공개일자	1993년 02월 25일
(71) 출원인	백운출 대구직할시 북구 침산동 삼익아파트 1동 1108호		
(72) 고안자	백운출 대구직할시 북구 침산동 삼익아파트 1동 1108호		
(74) 대리인	백흥기		

심사관 : 손재만 (책)
자공보 제1840호)

(54) 오토바이용 공구함 결착장치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 1

명세서

[고안의 명칭]

오토바이용 공구함 결착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고안의 분해사시도.

제2도는 본 고안의 사용상태 사시도.

제3도는 본 고안의 사용상태 측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 | |
|-------------|----------|
| 1 : 공구함 | 2 : 고정판 |
| 4, 4' : 요입부 | 5 : 체결구 |
| 6 : 단관 | 7 : 걸림편 |
| 8' : 잠금공 | 9 : 깨지간 |
| 11 : 걸림간 | 12 : 고정편 |
| 16 : 스톱퍼 | 18 : 스프링 |

[실용신안의 상세한 설명]

본 고안은 오토바이용 공구함 결착장치의 개량에 관한 것으로서 공구함 외부에서는 오토바이용 짐받이로부터 공구함을 분리할 수 없도록 하므로써 공구함의 도난을 방지토록 한 것이다.

종래에도 여러 가지의 공구함 결착장치가 고안된 바 있었으나 대부분 외부에서 결착장치를 조작하면 오토바이 짐받이로부터 공구함을 쉽게 분리할 수 있으므로 인하여 공구함을 자주 분실하게 되는 등의 단점이 있는 것이었다.

본 고안은 이러한 종래의 단점을 시정하고자 열쇠로 공구함의 뚜껑을 개방한 후 공구함 내측에서 스톱퍼를 뽑아올려야만 짐받이로부터 공구함이 분리가능토록 한 것으로서 이를 첨부도면에 따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오토바이용 공구함(1)의 저면에 고정판(2)을 피스(3)로 고정설치하되 고정판(2)의 양측에는 요입부(4)(4')가 형성된 체결구(5)를 나란히 대향되게 용접설치하되 체결구(5)의 일측에는 체결구(5)의

끝부분을 원형으로 말아 구성한 단관(6)을 형성하고 타측에는 걸림편(7)을 절곡형성하였다.

체결구(5)의 단관(6)에는 잠금편(8)이 형성된 패지간(9)을 축핀(10)으로 회전가능하게 설치하되 잠금편(8)에는 잠금공(8')을 뚫어 설치하고, 패지간(9)의 일측에는 걸림간(11)을 연결하여 걸림간(11)의 단부(11')가 걸림편(7)에 걸려 고정되게 하였다.

체결구(5)의 일측단관(6) 전방에는 제3도에서와 같이 고정편(12)을 용접설치하고 고정편(12)의 내측수장실(13)에는 걸림판(14) 및 걸림봉(15)이 교대로 형성된 스톱퍼(16)를 끼워 설치하되 스톱퍼(16)의 걸림봉(15)은 단부를 만곡형성하여 고정편(12)의 통공(12')을 관통하여 패지간(9)의 잠금공(8')에 끼워지게 하고, 스톱퍼(16)의 몸체(17)는 고정편(2)과 공구함(1)의 바닥을 관통하여 공구함(1)내측에 돌출되게 하고 스톱퍼(16)의 걸림판(14)과 고정편(2)사이에는 스프링(18)을 끼워 스프링(18)의 탄지력에 의해 외력을 가하지 않는 한 스톱퍼(16)의 걸림봉(15)이 패지간(9)의 잠금공(8')으로부터 치탈되지 않게 하여서 된 것이다.

미설명부호(19)는 짐받이, (20)은 황간, (21)은 손잡이, (22)는 만곡단부, (23)은 공구함 뚜껑이다.

이와 같이 구성된 본고안은 공구함(1)을 오토바이용 짐받이(19)에 체결고정하고자 할 경우에 공구함 내측에서 탄력 설치된 스톱퍼(16)의 몸체(17)를 잡고 당겨 패지간(9)의 잠금공(8')으로부터 스톱퍼(16)의 걸림봉(15)을 분리시킨 후 단관(6)에 핀(10)으로 결합된 패지간(9)의 손잡이(21)를 잡고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면 걸림간(11)의 단부(11')가 체결구(5)의 절곡편(7)으로부터 분리되어 체결구(5)의 요입부(4)(4')가 개방된다.

개방된 체결구(5)의 요입부(4)(4')에는 짐받이(19)의 황간(20)을 끼워 설치한 뒤 걸림간(11)을 다시 체결구(5)의 절곡편(7)에 걸어 체결구(5)와 걸림간(11)사이에는 짐받이(19)이 황간(20)이 위치되게하여 패지간(9)의 손잡이(21)를 잡고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시키면 패지간(9)의 잠금공(8')에 스톱퍼(16)의 걸림봉(15)이 끼워지므로 오토바이의 짐받이(19)에 공구함(1)이 고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타인이 공구함(1)을 분리시키고자 패지간(9)의 손잡이(21)를 잡고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시키더라도 고정편(12)의 수장실(13)내에 스프링(18)에 의해 탄력설치된 스톱퍼(16)의 걸림봉(15)이 통공(12')을 통하여 잠금공(8')에 끼워지면 스톱퍼(16)의 인위적인 조작없이 이탈되지 않으므로 짐받이(19)로부터 공구함(1)의 분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짐받이(19)로부터 공구함(1)을 분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열쇠로 공구함(1)의 뚜껑(2')을 개방한 후 공구함(1) 내측에서 스톱퍼(16)의 본체(17)를 잡아당기면 스프링(18)이 압축되면서 패지간(9)의 잠금공(7)으로부터 스톱퍼(16)의 걸림봉(15)이 분리되므로 이 상태에서 패지간(9)을 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면 패지간(9)은 체결구(5)의 단관(6)에 끼워진 축핀(10)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걸림편(7)으로부터 걸림간(11)이 분리되므로 짐받이(19)로부터 공구함(1)을 쉽게 분리시킬 수가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본 고안은 외부에서는 짐받이(19)로부터 공구함(1)의 분리가 불가능하므로 공구함(1)을 도난 당할 우려가 없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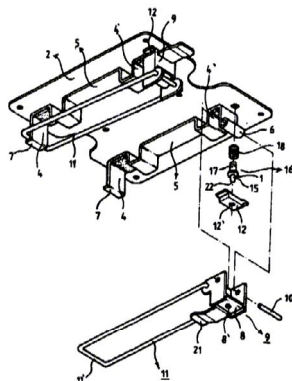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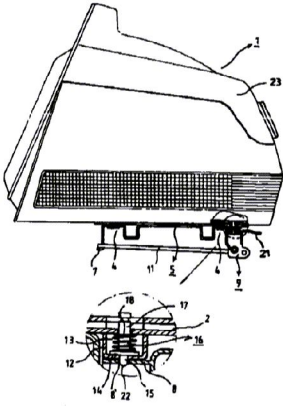
고정편(2) 저면에 요입부(4)(4')가 형성된 체결구(5)를 대향되게 나란히 용접고정하고 체결구(5)의 일측 단관(6)에는 패지간(9)을 회전가능하게 연결설치하되 패지간(9)의 잠금편(8)에는 잠금공(8')을 뚫어 설치하여 고정편(12)내에 스프링(18)으로 탄력설치된 스톱퍼(16)의 걸림봉(15)이 끼여지게하고 스톱퍼(16)의 본체(17)는 공구함(1)의 내측에 노출되게 하여서된 오토바이용 공구함 결합장치.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